

의안번호	2201364
의 퇴 인	윤준병의원
회 답 일	2024.7.11.
추계번호	24C1610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억원씩 발생하여 5년간 총 10억원으로 추계됨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기술영향평가’를 준용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인구영향평가 (안 제21조의2)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2 (인구영향평가)	○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함(제1항) ○ 인구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1조의2 (인구영향평가)	○	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제시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·사회·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, 매년 평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, 2024년에는 2억원의 예산 배정
 -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인구영향평가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것으로,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기술영향평가’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고, 유사사례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기술영향평가’의 정책연구비(2024년 기준 2억원)를
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
-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억원, 2029년 2억원 등 5년간 총
10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인구영향평가 (안 제21조의2)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